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9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조경태·곽규택·김 건

강승규 • 서지영 • 이헌승

김상욱 · 김용태 · 김석기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,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.

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. 아울러 펫보험의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 로써,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수의사는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 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41조제2항제2호 중 "두지 아니하거나"를 "두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사람,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진료부 및 검안부) ① ~	제13조(진료부 및 검안부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수의사는 「동물보호법」에		
	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제1		
	항에 따른 진료부나 검안부 기		
	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		
	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		
	<u>구에 따라야 한다.</u>		
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	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~ 1의8. (생 략)	1. ~ 1의8. (현행과 같음)		
2.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	2		
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<u>두지</u>	<u>두</u> 지 아		
<u>아니하거나</u> 진료 또는 검안한	<u>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</u>		
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	한 사람,		
거짓으로 기록한 사람			
2의2. ~ 9. (생 략)	2의2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